

「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」 적용시기 및 유예기간 안내

- ◆ (원칙) 수도권 APT이며, 예외 대상(신생아 특례대출 등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12.2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금번 관리방안 적용
(1개월 유예)

1. 방공제 적용

- 3.4(화) 이전 잔금일인 경우 → 12.1(일)까지 대출신청시, 적용 배제
(4개월 유예 효과)

* 잔금일과 관계없이 대출신청은 12.1(일)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대출 신청 권장[예 : 잔금일 3.4, 대출신청일 1.13(대출실행가능일 3.4~4.14)인 경우 규제 적용]

- 3.5(수) 이후 잔금일인 경우 → 12.1(일)까지 대출신청 불가*하므로, 방공제 적용

* (예) 잔금일이 3.5(수)인 경우, 대출신청은 12.5(목)~1.14(화) 중에 가능함

- 단, '25.3.5(수)~6.30(월) 중 잔금일인 경우 → ❶12.1(일) 이전 매매계약한 것으로 ❷임차인이 있는 등 즉시 입주가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12.2(월)~5.11(일)까지 대출 신청한 경우, 방공제 없이 대출 가능
(8개월 유예 효과)

2. 기금 잔금대출(후취담보) 제한

- 3.4(화) 이전 공고문상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경우
→ 12.1(일)까지 신청시, 잔금대출 허용 & 방공제 적용하지 않음

* 잔금일과 관계없이 대출신청은 12.1(일)까지 완료하여야 하므로 충분히 여유를 두고 대출 신청 권장(예: 잔금일 3.4, 대출신청일 1.13일인 경우는 규제 적용)

- 3.5(수) 이후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경우
→ 12.1(일)까지 대출신청 불가*하므로, 잔금대출 불가

* (예) 잔금일이 3.5(수)인 경우, 대출신청은 12.5(목)~1.14(화) 중에 가능함

- 단, '25.3.5(수)~6.30(월) 중 공고문상 입주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→ 12.1(일)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한 경우, 12.2(월) 이후 신청하더라도 잔금대출 허용(10개월 유예 효과)

* 단, 이 경우 방공제는 적용함

- '입주기간 시작'은 최초 모집공고문을 기준으로 하므로,
 - ①개인 사정으로 입주기간 중 실제 입주일은 7.1일 이후이거나,
 - ②공사 지연 등으로 입주가 지연되어 입주일이 7.1일 이후인 경우에도 잔금대출 허용(10개월 유예 효과)

* 단, 이 경우에도 방공제는 적용되며 입주일 기준으로 50일 전 대출신청 필요
(예: 7.31일 입주하는 경우 → 6.11일까지 대출신청)